

의안번호	2209163
의 퇴 인	최은석 의원
회 답 일	2025. 3. 26.
추계번호	25F1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율 등 추가 및
생산품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현행 감면기간이 지난 후 5년간 30%, 이후 2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수 감소는 12년간 총 256.5억 원(연평균 21.4억 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수 감소는 5년간 총 3,637억 원(연평균 727.4억 원)으로, 2026년 12.1억 원, 2037년 21.5억 원 등 2026년부터 2037년까지 12년간 총 3,893.5억 원(연평균 324.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향후 계속기업을 가정함에 따라 추계기간 이후에도 세수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함
- 부칙에 따라 2025년 중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시행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6~2037년까지 추계
 - t년에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간 100%, 2년(t+4~t+5)간 50%, 5년(t+6~t+10)간 30%, 그 이후(t+11~) 20% 감면율 적용
 - 법 시행 이후 2026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여 향후 5년간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6~2037년

(단위: 억 원)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누적	연평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안 제85조의6 제2항)	12.1	15.0	18.2	20.4	22.5	25.1	26.5	25.2	24.3	23.4	22.3	21.5	256.5	21.4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85조의11 신설)	565		636		717		808		911		3,637		727.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5조의6 제2항(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5년의 감면 적용기한 이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유지하는 동안 감면 계속 적용 - 감면을 추가 신설: (현행) 3년간 100%, 2년간 50% → (개정안) 3년간 100%, 2년간 50%, 5년간 30%, 이후 20%	
2	안 제85조의11 신설(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2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85조의6 제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안 제85조의11 신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중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계속기업을 가정함에 따라 추계기간 이후에도 세수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기간을 추가하여 감면율을 적용함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2025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6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2025년 법 시행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은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201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유지 기간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
 - t년에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t+1~t+3)간 100%, 2년(t+4~t+5)간 50%, 5년(t+6~t+10)간 30%, 그 이후(t+11~) 20% 감면율 적용

- 따라서 2026~2037년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유지 및 운영함으로써 세액감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발생

[표 2] 개정안에 따른 세액감면 흐름: 2026~2037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13년 인증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4년 인증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5년 인증	3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6년 인증	30%	3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7년 인증	30%	30%	3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8년 인증	30%	30%	30%	30%	20%	20%	20%	20%	20%	20%	20%	20%
'19년 인증	30%	30%	30%	30%	30%	20%	20%	20%	20%	20%	20%	20%
'20년 인증	50%	30%	30%	30%	30%	30%	20%	20%	20%	20%	20%	20%
'21년 인증	50%	50%	30%	30%	30%	30%	30%	20%	20%	20%	20%	20%
'22년 인증	100%	50%	50%	30%	30%	30%	30%	30%	20%	20%	20%	20%
'23년 인증	100%	100%	50%	50%	30%	30%	30%	30%	30%	20%	20%	20%
'24년 인증	100%	100%	100%	50%	50%	30%	30%	30%	30%	30%	20%	20%
'25년 인증		100%	100%	100%	50%	50%	30%	30%	30%	30%	30%	20%

주: 현행 5년간(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 이후 5년간 30%, 이후 20% 적용

- 2025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수는 최근 5년('19~'23)간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과거 10년('14~'23)간 법인세 신고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총부담 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에 따른다고 가정
 - 과거 10년('14~'23)간 1기업당 감면액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연차별로 유지하는 비중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202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른 2019~2024년간 구매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및 감면을 추가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 (개정연혁)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과 사후관리 규정을 2010.12.27. 신설하고, 감면기한 및 감면을 변경, 장애인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2013. 1. 1. 일부개정: 감면기한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4. 1. 1. 일부개정: 감면율을 종전 5년간 50%에서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로 인상

- 2019.12.31. 일부개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증대 목적의 감면 한도 신설
 $\text{감면 한도} = 1\text{억 원} + (\text{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times 2\text{천만 원})$

○ (현행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적용기한: 2025.12.31.
- 감면율: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개정안) 최초 3년 100%, 2년 50%, 5년 30%, 이후 20%

□ (감면실적) 최근 5년('19~'23)간 감면 규모는 2019년 신고기준 49.2억 원에서 2021년 신고기준 74.7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3년 신고기준 53.6억 원으로 대부분 법인 사업자에서 발생

[표 3]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법 인 세	35.5	55.7	63.3	47.5	47.3
소 득 세	13.7	16.3	11.4	7.1	6.3
합 계	49.2	72	74.7	54.6	53.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26~'30)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추정한 후, 연차별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과 1기업당 감면액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출

- 신규로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본점) 수는 2019년 82개에서 2024년 143개로 증가
 - 2019~2024년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연평균 증가율: 11.8%

[표 4] 신고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신규 인증 표준사업장 수	82	97 (18.3)	119 (22.7)	94 (△21)	109 (16.0)	143 (31.2)	11.8

주: () 안은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25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를 추계한 후 과거 10년('14~'23)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이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인증연도별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를 추계
 - 과거 10년('14~'23)간 법인세 신고한 법인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 50.7%
 - 과거 10년('14~'23)간 종합소득세 신고한 개인사업자 대비 과세소득자 발생의 비중: 88%
 - 2024년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중 법인사업자 비중(87.4%) 및 2022 과세연도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비중(88.2%)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한 기업 수 추정치에 대하여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을 사용

[표 5] 2025년 기준 인증연도별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

(단위: 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인증유지 표준사업장 수	80	14	32	40	32	44	61	77	94	79	103	141	160 ^{b)}	957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²⁾	41	7	16	20	16	22	31	39	48	40	52	71	81	485

주: 1) 2025년 신규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 2024년 인증한 표준사업장 수×연평균 증가율

2)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 인증유지 표준사업장 수×과거 10년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 비중

- 2025년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4.12.31. 기준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은 n년 전 인증을 취득한 기업 대비 인증을 유지한 기업의 비중으로 추정

[표 6]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 2015~2024년

(단위: 개, %)

	'24 (1년차)	'23 (2년차)	'22 (3년차)	'21 (4년차)	'20 (5년차)	'19 (6년차)	'18 (7년차)	'17 (8년차)	'16 (9년차)	'15 (10년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기업 수(A)	143	109	94	119	97	82	72	47	66	52
'24.12.31. 기준 인증 유지기업 수(B)	141	103	79	94	77	61	44	32	40	32
비중(B/A×100)	98.6	94.5	84.0	79.0	79.4	74.4	61.1	68.1	60.6	61.5
							62.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 취소 사업체 명단('24.12.31.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기준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대상 기업 수를 추정
 - 2025년 기준 '13~'18년 인증받은 기업의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는 4년('15~'18)간 평균 인증유지 비중(62.4%)으로 추정한 이후 일정하다고 가정
 - '19~'25년 인증받은 기업의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는 6년차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유지 비중을 반영하고 이후 7년차부터는 4년('15~'18)간 평균 인증유지 비중(62.4%)으로 추정한 이후 일정하다고 가정

[표 7] 연도별 인증유지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 2026~2037년

(단위: 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3년 인증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14년 인증	4	4	4	4	4	4	4	4	4	4	4	4
'15년 인증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년 인증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7년 인증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8년 인증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9년 인증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0년 인증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1년 인증	44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2년 인증	37	31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23년 인증	48	40	32	20	20	20	20	20	20	20	20	20
'24년 인증	66	55	43	34	25	25	25	25	25	25	25	25
'25년 인증	76	64	51	40	30	18	18	18	18	18	18	18
합계	390	336	291	259	240	228	228	228	228	228	228	228

주: [표 5]의 세액감면 발생기업 수 추정치에 [표 6]에 연차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비중을 곱하여 추정

- 신고연도 기준 과거 10년('14~'23)간 1기업당 감면액은 0.47억 원으로 최초 감면 발생부터 최초 3년간 100%, 2년간 50%, 5년간 30% 이후 20%로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
 - 과거 10년('14~'23)간 1기업당 감면액(0.47억 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합계(478.1억 원)를 감면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합(1,023개)으로 나눈 값
 - 2020~2025년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현행 감면기간이 적용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26~2037년

(단위: 억 원)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3년 인증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14년 인증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15년 인증	1.4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16년 인증	1.8	1.8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7년 인증	1.4	1.4	1.4	0.9	0.9	0.9	0.9	0.9	0.9	0.9	0.9	0.9
'18년 인증	2.0	2.0	2.0	2.0	1.3	1.3	1.3	1.3	1.3	1.3	1.3	1.3
'19년 인증	2.7	2.7	2.7	2.7	2.7	1.8	1.8	1.8	1.8	1.8	1.8	1.8
'20년 인증	8.9	3.4	3.4	3.4	3.4	3.4	2.3	2.3	2.3	2.3	2.3	2.3
'21년 인증	11.0	10.3	3.8	3.8	3.8	3.8	3.8	2.5	2.5	2.5	2.5	2.5
'22년 인증	18.3	8.7	7.3	2.7	2.7	2.7	2.7	2.7	1.8	1.8	1.8	1.8
'23년 인증	24.0	22.6	9.4	7.5	2.8	2.8	2.8	2.8	2.8	1.9	1.9	1.9
'24년 인증	32.9	31	25.9	10.1	8.0	3.5	3.5	3.5	3.5	3.5	2.4	2.4
'25년 인증		35.7	30.1	24.0	9.4	7.1	2.5	2.5	2.5	2.5	2.5	1.7
합계	107.2	123.3	90.9	62	39.9	32.2	26.5	25.2	24.3	23.4	22.3	21.5

주: [표 7]의 신고연도별 감면대상 기업 수 추정치에 1기업당 감면액 및 감면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반영하여 추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감면기간이 지난 후 5년간 30%, 이후 20% 감면을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6년 12.1억 원, 2037년 21.5억 원 등 12년('26~'37)간 총 256.5억 원 (연평균 21.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추계기간 이후에도 세수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6~2037년

(단위: 억 원)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누적	연평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조정 (안 제85조의6 제2항)	12.1	15.0	18.2	20.4	22.5	25.1	26.5	25.2	24.3	23.4	22.3	21.5	256.5	21.4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추계방법

-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202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¹⁾에 따른 2019~2024년간 구매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중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세액공제 받는 기업의 비중은 최근 5년('19~'23)간 법인세 신고기준 전체 법인수 대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에 따른다고 가정
 -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추계기간 이후에도 세수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향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세수효과를 추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은 2019~202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였으나, 2024년 구매계획은 7,457억 원으로 2023년 구매실적 대비 11.5% 감소
- 2019~2024년간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기관 등을 제외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

[표 10]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 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연평균 증가율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국가기관	400	568	634	929	954	1,556	20.1
	자치단체	954	1,339	1,487	1,682	1,904	1,251	
	교육청	349	541	551	788	1,396	1,029	
	소계	1,703	2,448	2,672	3,399	4,254	3,836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공기업 등 ¹⁾	2,278	3,046	3,223	3,657	4,122	3,573	12.7
	지방의료원	14	24	36	45	49	48	
	소계	2,292	3,070	3,259	3,702	4,171	3,621	
합계		3,995	5,518 (38.1)	5,931 (7.5)	7,101 (19.7)	8,425 (18.6)	7,457 (△11.5)	13.3

주: p는 구매계획

1) 공기업 등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포함

() 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의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각 연도

- 공기업 등과 지방의료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다고 가정하여 구매비용을 추정하고, 실제 총부담세액이 발생한 법인의 비중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정
 - － 공기업 등과 지방의료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용은 2019~2024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른다고 가정
 - － 공기업 등과 지방의료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5년('19~'23)간 총부담세액 발생 법인의 비중(49.1%)에 따라 발생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용 및 세액공제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구매비용 추정(A)	4,599	5,183	5,841	6,583	7,419
세액공제액(B=A×25%)	1,150	1,296	1,460	1,646	1,855
세액공제 발생액 추정 (D=B×49.1%)	565	636	717	808	911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565억 원, 2031년 911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637억 원(연평균 727.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추계기간 이후에도 세수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85조의 11 신설)	565	636	717	808	911	3,637	727.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